

정책분석과 동향

다자녀 지원 정책 현황과 시사점

|배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다자녀 지원 정책 현황과 시사점

The Multi-Child Family Policy: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for Improvement

배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

다자녀의 기준이 2020년 전후를 기점으로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된 정책의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는 아동 1인당 실질적 투자를 목표로 한 정책 전환이며, 지방자치단체도 관련 조례 제정과 세부 정책 재편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세부 정책별로 지원의 기준과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일부 지역에서 도입한 ‘초다자녀’라는 개념은 지원 대상의 세분화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한편 제도 내에서 새로운 선별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현재 다자녀 정책은 주로 영아기와 초기 양육 부담 경감에 집중되어 있는데, 가구 단위의 감면·할인 중심의 정책과 현금(성) 급여의 단기적 지원에 쏠려 있다. 다자녀 정책은 출산을 제고라는 기능적 목적을 넘어 장기적 관점에서 아동의 권리 보장과 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애주기별 정책과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1 들어가며

“자녀 두 명도 이젠 다자녀”(김연주, 2023. 8. 17.)라는 언론 보도가 보여 주듯 최근 몇 년에 걸쳐 한국 사회의 ‘다자녀’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정의는 점진적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과거 ‘세 자녀 이상’으로 통용되던 다자녀 기준은 저출생 심화와 고령

화 등 급격한 인구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 속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완화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특히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서는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아동 1인당 실질적이고 충분한 투자가 가능한 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중앙정부는 다자녀 지원 정책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 제정과 세부 정책 재편을 통해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다자녀가구의 규모가 기존의 약 10% 내외에서 40~60%가량으로 증가하여 정책 수혜 집단의 규모와 정책 체감도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최효미 외, 2020; 배혜원, 2024).

그러나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다자녀가정 지원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절반 이상(52.7%)이 다자녀 지원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들 중 61.8%는 다자녀 기준 완화 정책이 시행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인크루트, 2023). 특히 다자녀의 기준이 여전히 지역별, 세부 정책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어 정책 수혜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정혜윤, 2024. 3. 12.; 고순정, 2025. 3. 10.). 따라서 이 글에서는 다자녀의 개념과 현황, 정책 기준의 재편 과정을 살펴보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다자녀 지원 정책의 변화와 정책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다자녀의 개념과 현황

한국 사회에서 다자녀(多子女)에 대한 정의는 2020년 전후를 기점으로 재구성되었다. 즉 기존에

‘다자녀’는 주로 세 자녀 이상을 의미했으나, 2025년 현재는 일반적으로 두 자녀 이상을 의미한다(배혜원, 2024; 이만수, 2024).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의 정책 방향이 자리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20). 즉 ‘다자녀 지원 기준을 두 자녀로 개선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아동 1인당 실질적으로 보다 충분한 투자가 가능한 구조로 전환’함으로써 ‘아동 기본권의 보편적 보장’을 실현하고, 궁극적으로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을 구현하고자 한 것이다(대한민국정부, 2020).

정책 변화에 따라 다자녀가구의 규모 또한 변화했다. 다자녀가구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없으나, 출산 순위별 출생아 통계, 영유아 수별 가구 통계, 미성년자가 있는 자녀수별 가구 통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모와 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 출산 순위별 출생아 비중은 2016~2024년 둘째아 이상 47.5%(19만 2300명)에서 38.7%(9만 2200명)로 감소하였고, 셋째아 이상은 9.8%(3만 9600명)에서 6.8%(1만 6300명)로 줄어들었다. 영유아 수별 가구 비중은 2016~2023년 두 자녀 이상 55.6%(11만 4400명)에서 49.0%(6만 6500명)로 감소하였고, 세 자녀 이상은 11.5%(2만 3600명)에서 9.0%(1만 2200명)로 줄어들었다. 한편 미성년자가 있는 자녀수별 가구 비중은 같은 기간 두 자녀 이상 61.2%(34만 1100명)에서 56.7%(26만 400명)로 감소하였고, 세 자녀 이상은 10.5%(5만 8700명)에서 9.5%(4

만 3500명)로 줄어들었다. 종합하면 다자녀가구의 (2021)을 기점으로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된 개념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었으며, 이에 따라 다자녀가구의 규모는 10% 내외

[표 1] 출산 순위별 출생아 비중(2016~2024)

(단위: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p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첫째아	52.5	52.7	52.9	53.7	54.8	55.7	58.2	60.2	61.3
둘째아	37.7	37.5	37.6	36.9	35.9	35.5	33.7	32.3	31.9
셋째아 이상	9.8	9.8	9.4	9.5	9.2	8.8	8.1	7.5	6.8
둘째아 이상	47.5	47.3	47.0	46.4	45.1	44.3	41.8	39.8	38.7

주: 'p'는 2024년에 발생한 출생 중 2024년 1월 1일~2025년 1월 31일까지의 신고분 및 향후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연 신고분을 추정하여 집계 분석한 잠정값으로 확정값(2024. 1. 1.~2025. 4. 30.)과는 차이가 있음.

출처: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보도자료], 통계청, 2025. 2. 26, p. 28.

[표 2] 영유아 수별 가구 비중(2016~2023)

(단위: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자녀	44.4	45.0	45.6	46.2	47.0	47.9	49.3	51.0
2자녀	44.1	43.8	43.6	43.2	42.8	42.2	41.2	40.0
3자녀 이상	11.5	11.1	10.8	10.5	10.3	10.0	9.5	9.0
2자녀 이상	55.6	55.0	54.4	53.8	53.0	52.1	50.7	49.0

주: 영유아 자녀는 만 5세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출처: "영유아수별 가구 및 연령별 영유아- 시도", 통계청(KOSIS), 2025,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C1601&conn_path=I3

[표 3] 미성년자가 있는 자녀수별 가구 비중(2016~2023)

(단위: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자녀	38.8	39.4	40.0	40.7	40.4	40.9	42.4	43.3
2자녀	50.7	50.1	49.6	49.1	49.3	48.9	47.9	47.2
3자녀 이상	10.5	10.4	10.3	10.2	10.3	10.2	9.7	9.5
2자녀 이상	61.2	60.6	60.0	59.3	59.6	59.1	57.6	56.7

주: 한 가구에 함께 거주하는 만 18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를 집계 대상으로 하며, 부모가 서로 다른 2가족 이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자녀 수의 최대값으로 그 가구의 자녀수를 결정.

출처: "미성년자가 있는 자녀수별 가구-시군구", 통계청(KOSIS), 2025,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C1601&conn_path=I3

에서 약 40~60%까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중앙정부의 다자녀 지원 정책

가. 중앙정부의 다자녀 지원 정책 변화

다자녀 지원 정책은 인구변동에 따른 조정과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의 일환이다. 다자녀 지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시점은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출산을 회복’의 방향으로 전환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기(2005~현재)로 볼 수 있다. 제1~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다자녀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주로 자녀양육비, 조세 및 사회보험, 주거안정 지원, 공공요금 감면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정부는 다자녀가구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 시기의 정책은 두 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수에 비례하여 점진적으로 지원하는 조세 및 사회보험 지원,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등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주택자금 대출 혜택, 전기요금 감면 등의 정책이 시행되었다.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제1차 기본계획의 기초를 이어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보다 적극적인 다자녀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둘째아 이상 자녀에 대한 고등

학교 수업료 전액 지원, 국가장학금 우선 선발 등을 시행했다. 또한 18세 미만의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였다. 이 외에도 세 자녀 이상 가구를 위한 주택특별공급 비율 확대, 주택자금 대출 우대금리 확대, 다자녀 공무원의 셋째 자녀부터 1인당 1년간 재고용을 추진하기도 했다.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제1~2차 계획이 주로 기존 가구의 보육 부담 완화, 제도 기반 조성, 비용 지원 중심이었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정책 패러다임을 ‘청년층의 일자리·주거 대책’, ‘사각지대 해소와 실천’, ‘문화 개선’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이 시기의 다자녀 정책은 기대 자녀수에 따른 접근으로 변화했다. 즉 한 자녀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두 자녀를 꿈꿀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며, 세 자녀 이상의 가구가 사회적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방향이 재구성되었다. 기존의 정책이 두 자녀 가구 중 일부 또는 세 자녀 가구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 시기에는 첫 자녀에 보다 집중했다. 따라서 제3차 기본계획의 다자녀 정책은 이전에 도입된 제도들을 안착시키는 데 집중하였다.

다자녀 정책이 분기점을 맞이한 것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2018~2022)’(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12.)이 실행되면서부터이다. 정부는 급격한 인구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정책 방향을 ‘출산 장려 중심’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보장과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 투자 확대’로 전환하였

다. 가족 관점을 기존의 ‘결혼 가족, 3자녀 이상 다 자녀 중심’에서 ‘아이 중심, 모든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었다. 이에 따라 제4차 기본계획이 실시된 2021년 이후에는 다자녀 기준 완화를 통해 다자녀가구를 위한 양육·교육 부담 완화, 주거 지원 확대, 생활 밀착형 혜택 제공, 서비스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정책 등이 추진되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9. 15.;

2022. 11. 9.). 또한 정부는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관계부처 합동, 2023. 7. 27.),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현황 및 개선 방향’(관계부처 합동, 2023. 8.),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 및 향후계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24. 8. 30.) 등을 발표하며 다자녀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표 4]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기별 다자녀 정책의 패러다임과 주요 추진 과제

구분	제1차(2006~2010)	제2차(2011~2015)	제3차(2016~2020)	제4차(2021~2025)
다자녀 정책 패러다임	•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 기대 자녀수에 따른 대책	• 다자녀 지원 기준 완화를 통한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
자녀 양육비	• 두 자녀 이상 보육교육비 추가 지원	• 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 둘째아 이상 대학생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	• 셋째아 이상 장학금 지원 대상 연차 확대	•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 • 생활 밀착형 제도 마련
조세 및 사회보험	• 다자녀가정 소득공제 체계 개편(두 자녀) • 세 자녀 이상 가구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경감 •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두 자녀)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내 실효(두 자녀)	•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두 자녀) • 세 자녀 이상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등록세 면제	• 세 자녀 이상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등록세 면제 • 자녀 세액공제, 자녀장려세제 안착	
주거 안정 지원	•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세 자녀) • 주택자금 대출 혜택(세 자녀)	•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비율 상향 조정(세 자녀) • 주택자금대출 우대금리 확대(세 자녀)		• 다자녀가구 건설 임대 공급 • 넓은 평형 우선 공급 • 주택자금대출 한도 상향 및 우대금리
공공요금 감면	• 세 자녀 이상 전기요금 감면	• 세 자녀 이상 전기요금 감면		
고용		• 자녀 공무원 셋째 자녀부터 1인당 1년간 재고용		

주: 1) 출처의 자료를 토대로 저자가 재구성.

2) 기본계획의 추진 과제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시행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출처: 1)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보완판)”, 대한민국정부, 2005.

2)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대한민국정부, 2010.

3)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대한민국정부, 2015.

4)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보완판)”, 대한민국정부, 2020.

나. 중앙정부의 다자녀 지원 정책 현황

현재 중앙정부에서 시행 중인 다자녀 지원 정책

현황은 <표 5>와 같다. 보건복지부 등 9개 부처에서 주거안정 지원(6개), 공공요금 감면(8개), 교육 지원(2개), 세제 혜택(3개), 육아 지원(3개), 연금

[표 5] 중앙정부의 다자녀 지원 정책 현황

소관 부처	정책 구분	사업명	자녀수	연령	기타	차등 지원
국토교통부	주거안정 지원 (6개)	주택특별공급	두 자녀		태아입양자 포함	경쟁 시 가점
		국민임대 · 장기전세 ·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두 자녀		태아 포함 소득 자산 요건	경쟁 시 가점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 지원	두 자녀	미성년	소득 자산 요건	금리 우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세 자녀	미성년	태아 포함 소득 자산 요건	
		주택구입자금 · 전세자금 대출	두 자녀		소득 자산 요건	금리 우대
		기존 주택 전세임대 지원	두 자녀		소득 자산 요건	대출한도 상향
산업통상자원부	공공요금 감면 (8개)	철도 운임 할인	두 자녀	25세 미만		
		공항주차장 요금 할인	두 자녀	막내 15세 이하		
		전기요금 감액	세 자녀			
		도시가스요금 할인	세 자녀			
		지역난방비 감감	세 자녀			
		국립수목원 등 이용료 감면	두 자녀	막내 13세 미만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세 자녀	19세 미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시설 이용 요금 할인	두 자녀			
교육부	교육 지원 (2개)	국가장학금	세 자녀		소득, 성적 요건 미혼, 연령 요건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세 자녀		소득, 학점 이수 요건 연령 요건	
기획재정부	세제 혜택 (3개)	자녀 세액공제	두 자녀	8세 이상	입양자 위탁아 포함	공제액 확대
행정안전부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세 자녀	18세 미만		
여성가족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두 자녀	18세 미만		감면 세액 확대
보건복지부	육아 지원 (3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두 자녀	12세 이하		
		첫만남 이용권	두 자녀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기저귀 지원 사업	두 자녀		소득 요건	
	연금 (1개)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두 자녀		2008년 이후 둘째 이상 자녀 출산자	가입 기간 추가 인정

주: 출처를 토대로 저자가 재구성.

출처: 1)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 정책 사례집”,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2024.

2) “2025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2025.

3) “2025 첫만남 이용권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25.

4) “2025 모자보건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25.

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다자녀가구 개관”, 법제처, 2025.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126&ccfNo=1&ccciNo=1&cnpClsNo=1>

(1개) 등 총 6개 영역의 23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두 자녀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15개, 3자녀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8개로, 다자녀 지원 정책의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녀수 외에 다른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정책은 전기요금 감액, 도시가스요금 할인 등 5개 사업이다. 이 외의 18개 사업은 자녀수 외에 연령, 소득, 자산, 성적 등 다양한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다.¹⁾ 한편 두 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되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주택특별공급, 국민임대 등 우선공급, 기존 주택 매입임대 주택 지원, 자녀세액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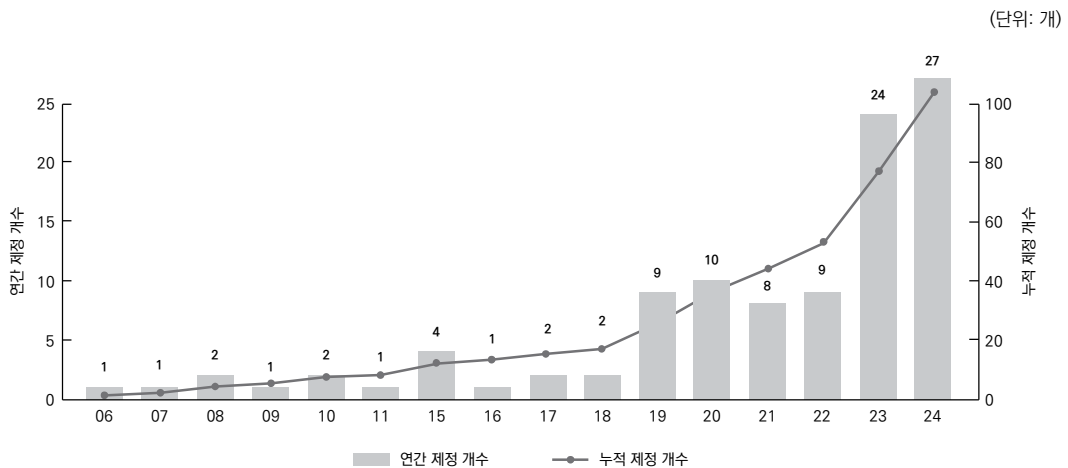
등 총 9개 사업이다. 즉 자녀세액공제는 두 자녀까지는 연 55만 원을 일괄 공제하고, 세 자녀부터는 2명을 초과한 자녀 1인당 연 40만 원을 가산하여 공제액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세 자녀인 경우 총 95만 원, 네 자녀인 경우 135만 원을 공제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지원 정책

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지원 정책 변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자녀 지원 관련 조례를 다수 제·개정하며, 점진적으로 다자녀 기준을 완화

[그림 1]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지원 관련 조례 제정 추이



주: 1) 자치법규상 ‘다자녀’로 검색하여 수집한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지원 관련 조례 리스트를 자료로 작성하였으며, 이 중 시도교육청의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관련 조례는 제외하였음.

2) 기존 조례를 다자녀 관련 조례로 전면 개정한 경우에는 전면 개정된 시기를 조례 제정 시기로 구분하였음.

출처: “다자녀”, 국가법령정보센터, n.d., <http://www.law.go.kr>

1) 주택특별공급 정책은 기타 요건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미성년 자녀수, 영유아 자녀수에 따라 가점 기준이 상이하(다자녀가구 및 노부모 부양 주택특별공급 운영 지침 제6조 입주자 선정 방법의 1).

했다. [그림 1]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지원 관련 조례 제정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2025년 3월 기준 총 104건의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이 중 83.7%에 해당하는 87건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2018. 12.) 발표 이후 제정되었다. 특히 2023~2024년에는 조례 제정이 가장 집중된 시기로, 연간 20건 이상의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다자녀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관계부처 합동, 2023. 8.)의 정책 방향과 관련이 있다. 즉 다자녀 기준이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동일 광역 내 기초자치단체 간에도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부는 제도적 일관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24년까지 지자체 조례 및 사업 단위에서도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로 완화할 것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다.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 지원 관련 조례,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 관련 조례, 인구정책 기본 조례 등을 통해 ‘다자녀’를 두 자녀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자녀 연령, 가구 형태 등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두 자녀 가구수를 고려할 때 기계적인 요건 완화는 막대한 재정 소요가 불가피하므로 예산 투입 효과성에 따른 단계적·전략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3. 8.). 일부 지역에서는 ‘초다자녀’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정책 대상에 대한 차등적 지원 체계를 만들고 있다. 즉 충청북도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다섯 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

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초다자녀가정’의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충청북도, 2024. 7. 14.). 이 외에 부산은 네 자녀 이상을 ‘초다자녀’로 정의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자녀의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관련 조례에 신설하였다.

종합하면 중앙정부의 정책 목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도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로 완화하였으며, 다자녀 지원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는 자녀 연령, 가구 형태 등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자녀수를 기준으로 ‘초다자녀’ 개념을 별도로 설정하여 지원 체계를 세분화하고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지원 정책 현황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지원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자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 정책 사례집(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2024)’을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재구성하여 분석하였다. 이 글에서는 세부 사업명, 지원 기준, 지원 내용에 ‘다자녀’ 또는 ‘출산 순위’ 관련 항목이 명시된 사업을 다자녀 지원 정책으로 분류하였다. 즉 ‘다자녀 장학금’, ‘둘째아 이상 초음파 검사비 지원’ 등과 같이 다자녀 지원 관련 내용이 사업명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지원 기준과 내용에 ‘셋째아 이상 출산

[표 6] 지방자치단체 출산 지원 정책 중 다자녀 지원 정책의 지원 분야 및 유형

(단위: 개, %)

구분	지원 분야							지원 유형							전체
	결혼 전	결혼	임신 전	임신	출산	육아	가족	현금	현금성	바우처	서비스	현물	교육 홍보	인프라	
출산 지원 정책(A)	39	121	185	506	806	732	107	839	221	216	626	301	283	10	2,496
다자녀 정책(B)	-	7	-	2	43	290	3	110	151	28	18	30	8	-	345
비중(B/A, %)	-	5.8	-	0.4	5.3	39.6	2.8	13.1	68.3	13.0	2.9	10.0	2.8	-	13.8

주: 1) 출처를 토대로 저자가 재구성.
2) 지원 분야와 지원 방법은 사례집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분류하되 지원 유형에서 상품권은 바우처로 분류하였음.
출처: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사례집”,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2024.

가정’, ‘두 자녀 30%, 세 자녀 이상 50% 할인’ 등을 포함할 경우 분석 대상으로 분류하였다.

출산 지원 정책은 총 2,496개이며, 이 중 다자녀 지원 정책은 13.8%(345개)로 비중은 크지 않다. 지원 분야별로 보면 출산 지원 정책은 출산(806개), 육아(732개), 임신(506개) 등이 주를 이루는 반면 다자녀 지원 정책은 육아가 전체 출산 지원 정책 중 39.6%(290개)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원 유형별로 보면 출산 지원 정책은 현금(839개), 서비스(626개)가 높게 나타났으나, 다자녀 지원 정책은 현금성 68.3%(151건), 현금 13.1%(110개)로 현금(성)이 주를 이룬다.²⁾

[그림 2]는 지방자치단체 다자녀 지원 정책의 지원 분야와 지원 유형을 보여 준다. 지원 분야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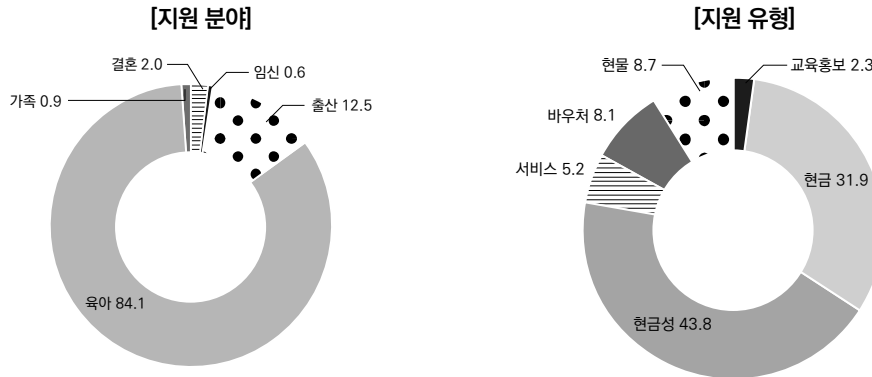
육아가 전체의 84.1%를 차지하며, 출산(12.5%), 결혼(2.0%), 임신(0.6%), 가족(0.9%) 순이다. 지원 유형별로는 현금성이 4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현금(31.9%), 현물(8.7%), 바우처(8.1%), 서비스(5.2%), 교육·홍보(2.3%) 순으로 나타났다. 육아정책으로는 상하수도 감면과 같은 현금성 지원이 대다수를 이루며, 양육지원금, 다자녀장려금 등의 현금 지원과 양육바우처, 행복쿠폰과 같은 바우처 정책도 일부 시행되고 있다. 결혼정책으로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현금 지원이 주를 이루며, 출산정책으로는 출생축하금,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등 현금(성) 지원이 시행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60개), 경남(38개), 경북(34개) 등에서 정책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 해당 사례집에서는 출산 지원 정책의 지원 분야를 생애 단계별로 구분하여 결혼(전), 결혼, 임신(전), 임신, 출산, 육아, 가족의 7개로 분류한다. 임신(전)은 난임부부 지원과 산전 검사 등 임신 준비 단계의 사업을, 임신은 엽산제·철분제 지원 등 임신 중 산모 지원을, 출산은 산후조리원비 지원과 출산축하금 등 출산 직후 3개월 이내의 사업을 포함한다. 육아는 산후조리 이후 양육 지원, 가족은 다자녀 캠페인 및 행사 등을 포함한다. 지원 유형은 현금(출산장려금 등), 상품권(지역화폐 등), 현금성(보험료 지원, 이용료 할인 등), 현물(물품 직접 지급), 바우처(이용권 및 쿠폰 등), 서비스(물품 제공 및 대여 등), 인프라 구축(육아나눔터 등), 교육(부모 교육 등), 홍보(행사 등)로 분류하고 있다.

[그림 2]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지원 정책 지원 분야와 지원 유형

(단위: %)



주: 출처를 토대로 저자가 재구성.

출처: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 정책 사례집”,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2024.

[표 7] 지방자치단체별 다자녀 지원 정책의 지원 분야와 지원 유형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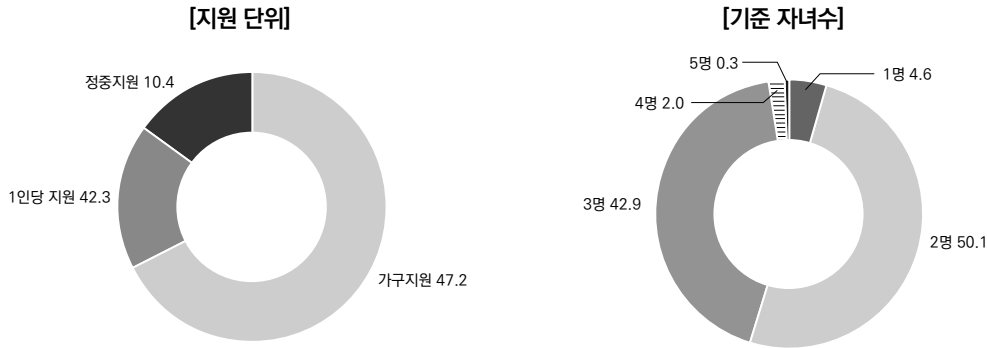
구분	지원 분야					지원 유형						전체(N)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가족	현금	현금성	바우처	서비스	현물	교육홍보	
전국	7	2	43	290	3	110	151	28	18	30	8	345
서울	0	0	4	22	0	10	10	3	1	2	0	26
부산	0	0	2	8	0	6	1	2	0	1	0	10
대구	0	0	1	15	1	3	5	1	4	2	2	17
인천	1	1	3	6	0	4	3	3	1	0	0	11
광주	0	0	2	9	0	4	6	1	0	0	0	11
대전	0	0	0	5	0	0	2	2	0	0	1	5
울산	0	0	1	6	1	1	3	0	3	0	1	8
세종	0	0	0	3	1	0	3	0	0	0	1	4
경기	0	0	6	54	0	15	35	3	2	5	0	60
강원	0	1	2	28	0	9	19	2	1	0	0	31
충북	3	0	0	15	0	6	10	1	1	0	0	18
충남	0	0	5	17	0	8	9	1	1	3	0	22
전북	1	0	2	18	0	10	9	0	0	1	1	21
전남	1	0	5	21	0	10	8	2	1	6	0	27
경북	0	0	3	31	0	7	15	2	0	8	2	34
경남	0	0	6	32	0	15	13	5	3	2	0	38
제주	1	0	1	0	0	2	0	0	0	0	0	2

주: 출처를 토대로 저자가 재구성.

출처: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 정책 사례집”,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2024.

[그림 3] 지방자치단체 다자녀 지원 정책의 지원 단위 및 기준 자녀수

(단위: %)



주: 출처를 토대로 저자가 재구성.

출처: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 정책 사례집”,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2024.

해당 지역의 기초자치단체 수가 많다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표 7). 정책의 내용과 구조는 지역 간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대부분 유사한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자녀 지원 정책의 분야와 유형의 다양성은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정책이 출산과 육아기 등 한시적 또는 일회성의 소득 보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은 지방자치단체 다자녀 지원 정책의 지원 단위 및 기준 자녀수를 보여 준다. 지원 단위에서는 ‘가구 단위 지원’이 47.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1인당 지원’이 42.3%, ‘점중적 지원’이 10.4%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가구 단위 지원은 일정 자녀수 이상일 경우 해당 가구 전체에 동일한 혜택을 일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주차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일

괄 적용하는 경우이다. 1인당 지원은 해당 자녀수 이상일 경우 자녀 1인당 동일한 금액이나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셋째아와 넷째아 각각에게 동일하게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점중적 지원은 자녀 순위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방식으로, 예컨대 삼척시에서는 첫째 36만 원, 둘째 60만 원, 셋째 84만 원, 넷째 120만 원의 점중적인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준 자녀수를 보면 2명이 50.1%로 가장 많고, 3명 42.9%, 1명 4.6%, 4명 2.0%, 5명은 0.3%였다. 지방자치단체 정책에서 다자녀의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실질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의 분석 결과 다자녀 지원 정책은 지원 단위에 따라 자녀수 기준 설정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요금 감면 등 보편적 지원을 확대

[표 8] 지방자치단체별 다자녀 지원 정책의 지원 단위 및 자녀수 기준

(단위: 개)

구분	가구 단위 지원					(아동 또는 산모) 1인당 지원					점증적 지원				전체 (N)
	1명	2명	3명	4명	소계	2명	3명	4명	5명	소계	1명	2명	3명	소계	
전국	3 ²⁾	89	70	1	163	65	74	6	1	146	13	19	4	36	345
서울	0	1	4	0	5	7	6	2	0	15	1	3	2	6	26
부산	1	3	6	0	10	1	5	0	0	6	0	1	0	1	17
대구	0	0	1	0	1	2	3	0	0	5	2	3	0	5	11
인천	0	4	1	0	5	3	0	0	0	3	0	2	1	3	11
광주	0	1	2	0	3	4	3	0	0	7	0	0	0	0	10
대전	0	3	2	0	5	0	0	0	0	0	0	0	0	0	5
울산	0	3	2	0	5	2	1	0	0	3	0	0	0	0	8
세종	1	1	1	0	3	1	0	0	0	1	0	0	0	0	4
경기	0	17	12	0	29	12	12	1	0	25	0	5	1	6	60
강원	0	8	6	0	14	7	6	0	0	13	4	0	0	4	31
충북	0	6	3	0	9	1	5	0	1	7	1	1	0	2	18
충남	0	11	5	0	16	4	2	0	0	6	0	0	0	0	22
전북	1	7	6	0	14	1	2	1	0	4	2	1	0	3	21
전남	0	9	7	1	17	4	5	1	0	10	0	0	0	0	27
경북	0	5	6	0	11	9	12	1	0	22	1	0	0	1	34
경남	0	8	6	0	14	7	12	0	0	19	2	3	0	5	38
제주	0	2	0	0	2	0	0	0	0	0	0	0	0	0	2

주: 1) 출처를 토대로 저자가 재구성.

2) 가구 단위 지원이면서 1명인 것은 출산 장려와 다자녀 캠페인을 동시에 진행하는 사업을 포함.

출처: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 정책 사례집”,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2024.

하는 가구 단위 지원은 두 자녀 이상을 기준으로 한 정책이 많아 다자녀 기준이 실질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가구 단위의 지원은 상하수도요금 감면,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등 생활요금 할인 중심의 정책이 대부분이며, 지원 금액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실제 지원 수준이나 수혜자의 체감도는 낮다는 한계가 있다(강하라 외, 2021; 강은애, 남이해, 2022; 오지혜, 김솔, 2022). 개별 자녀에게 지급되는 1인당 지원에서는 여전히 세 자녀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전통적인 다자녀 기준이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다. 점증적 지원

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1~2명을 중심으로 자녀 순위에 따라 지급 수준을 상향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역 간에도 일정 부분 차이를 보인다. 서울·경북·경남은 1인당 지원이, 경기·부산·강원은 상대적으로 가구 단위 지원이 많아 지역별로 다자녀 지원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다자녀 지원 정책은 지원 단위와 기준 자녀수 등에서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정책이 재편되어 가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음을 시사한다. 지역별 특성과 정책 여건을 반영한

[표 9] 지방자치단체 다자녀 지원 정책의 예산 및 비예산 사업 비중

(단위: 백만 원, 개, %)

구분	출산 지원 정책 예산(A)	다자녀 정책 예산(B)	비중(B/A, %)	다자녀 정책 중 비예산 사업 수	비예산 사업의 비중(%)
전국	1,275,935	127,009	10.0	105	30.4

주: 출처를 토대로 저자가 재구성.
출처: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 정책 사례집”,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2024.

결과이지만, 향후 정책의 일관성과 정합성을 높이고 지역 간 형평성을 완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표 9〉는 출산 지원 정책 중 다자녀 정책에 편성된 예산과 비예산 사업의 비중을 보여 준다. 전체 출산 지원 정책 예산은 약 1조 2,759억 원이며, 이 중 다자녀 정책에 배정된 예산은 약 1,270억 원으로 전체의 10.0%에 해당한다.³⁾ 다자녀 지원 정책이 전체 출산 지원 정책 중 차지하는 비중(13.8%)에 비해 예산 비중은 다소 낮은 편이다. 한편 전체 다자녀 정책 중 30.4%(105건)는 비예산 사업으로, 별도의 예산 편성 없이 감면, 우선순위 부여, 인센티브 부여 등의 행정적 조치나 제도적 적용만으로 운영되는 정책이 많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일부 지역에서는 다자녀 정책이 직접적인 재정지출보다는 행정적 접근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며, 지역 간 재정 여건과 정책 실행 방식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5 나가며

다자녀가구에 대한 정책적 정의와 제도적 기준은 저출생 심화 속에서 유연하게 조정되었으며, 과거 ‘세 자녀’를 기준으로 하던 다자녀 개념은 최근 ‘두 자녀’로 완화되었다. 가족의 역동성은 사회제도와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Hank & Steinbach, 2019), 다자녀에 대한 정의도 시대에 따라 달라진 것이다(Stamoulis & Pierrakos, 2023). 이러한 기준 변화는 중앙정부의 저출산 정책 방향,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개별 사업의 운영 기준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다자녀 기준 완화와 아동 1인당 실질적 투자 확대 방향은 기

3) 다만 지역별 다자녀 정책 예산을 해석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사업이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지만, 장애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을 함께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며, 관련 예산이 총액으로 계상되어 있어 다자녀가구에 실질적으로 배정된 금액을 분리해 산정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신혼부부 및 자녀 출산 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북 의성군의 ‘다자녀·다문화가정 출산육아용품 지원’, 전북 순창군의 ‘아동행복수당(2~17세)’ 등은 모두 다자녀가구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 외 다양한 대상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개별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의 정확한 비교는 어렵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오류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 개별 예산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존의 ‘출산 장려 중심 정책’에서 ‘아동 중심 복지 확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적 전환이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작동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정책 기준이 ‘두 자녀’로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세부 사업별로 다자녀 기준이 상이하다는 점은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두 자녀도 다자녀인가’라는 의문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5명인 상황에서(통계청, 2025. 2. 26.) 다자녀 가구의 규모가 40~60%라는 점도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는 대목이다. 이는 “두 자녀를 다자녀라 부르는 어색함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우정구, 2023. 6. 22.)는 표현처럼 정책 기준이 변화하더라도 사회가 이를 받아들이고 정착하는 과정은 보다 복잡적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또 다른 방향에서 정책 대상의 분화를 수반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초다자녀’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여 넷 또는 다섯 자녀 이상 가구를 별도의 정책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다자녀가구 내에서도 다시금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지원의 세분화와 맞춤형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한편 제도 내부에서 또 다른 선별과 배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즉 다자녀의 보편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준 완화가 오히려 새로운 구분의 근거가 되어 정책적 형평성의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다자녀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아동 1인당 실질

적인 투자 확대에 있지만, 현재의 정책 실행 구조는 다소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지원은 생애주기상 영아기 및 육아기에 집중되어 있으며(84.1%), 지원 방식은 현금(성) 급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75.7%). 이러한 정책적 접근은 초기 양육 부담 완화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효과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서는 한계를 지닌다. 특히 전체 정책 중 절반에 가까운 사업(47.2%)이 여전히 세 자녀 이상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구 단위 감면·할인 중심의 지원이 주요 방식을 이루어 정책 체감도 또한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강하락 외, 2021; 강은애, 남이해, 2022; 오지혜, 김솔, 2022). 더욱이 전체 다자녀 정책 중 30.4%가 비예산 사업이라는 사실은 안정적인 제도 운영과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재정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다자녀를 특정 자녀수로 규정하기보다 점증적 지원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프랑스는 가족수당(Allocations Familiales), 정액수당(Allocation forfaitaire), 가족보충수당(Complément familial) 제도 등을 통해 두 자녀부터 지원하되 자녀수 증가에 따라 지원이 점증적으로 확대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CLEISS: Centre des Liaisons Européennes et Internationales de Sécurité Sociale, 2024). 이탈리아는 부양 자녀에 대한 단일 및 보편적 수당(Assegno unico e universale per i figli a carico)을 도입하여 2023년부터는 대가족(nuclei

familiari numerosi)에 대한 지원으로 세 자녀 가구의 1~3세 사이 자녀 한 명당 수당 50%를 가산하고 있으며, 네 자녀 이상 가구는 정액 인상률을 50%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다(INPS, 2023. 4. 17.).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다자녀라는 별도 범주를 설정하기보다 보편적 아동 지원 체계 내에서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점증적 지원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최근 싱가포르의 다자녀 지원 정책 변화는 우리나라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싱가포르는 2023년 중장기 국가계획(Forward Singapore)에서 발표한 정부 공약을 바탕으로 2025년 2월 대가족계획(Large Families Scheme, LFS)을 도입했다. 이 정책은 세 자녀 이상을 대가족(large families)으로 정의하면서도 아기보너스 제도(Baby Bonus Scheme), 생활지원 SG크레딧(LifeSG Credits), 대가족 메디세이브 보조금(Large Family MediSave Grant) 등 다양한 지원 제도에서 자녀수에 따른 점증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설계했다(Strategic Group Singapore, 2025). 특히 첫째, 둘째 자녀에게 기본적인 지원을 제공하면서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은 다자녀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모든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균형 잡힌 접근법으로 평가된다(Tan, 2025. 2. 18). 이 정책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2025년 셋째 자녀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정책 도입으로 인한 형평성 확보를 위해 출생 순서, 자녀수와 무관하게 자녀

가 있는 모든 가족에게 아동 생활지원 SG크레딧(Child LifeSG Credits), 에듀세이브 계좌(Edusave Account), 고등교육계좌(PSEA: Post-Secondary Education Account) 등의 일회성(one-off)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Ministry of Finance Singapore, 2025).

따라서 다자녀 정책은 이제 단순한 출산 장려 수단이 아니라 가족정책 전반의 방향성과 가치를 반영하는 ‘지표적 정책’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OECD(2019)는 가족정책을 노동, 복지, 교육, 주거, 세대 간 연계를 포함하는 메타정책(meta-policy)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다자녀 정책이 생애주기별 정책과 통합적으로 작동해야 함을 의미한다. 독일의 ‘세 자녀 이상: 중산층의 가족(Three children and more: families from the middle of the society)’(2021) 보고서는 “대가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다자녀가구가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 가치관, 자원, 생애 계획 측면에서 이질적인 특성을 가지는 다양한 집단을 강조하였다(Bujard et al., 2021). 따라서 이에 대한 지원 역시 다양한 가족 형태와 필요에 맞춘 정책 설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다자녀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인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다자녀 정책이 향후 출산율 제고라는 기능적 목적을 넘어 아동과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돌봄과 재생산의 책임을 사회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원 방식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제고

하며, 생애주기별 가족정책 전반의 연계성과 체계성을 강화해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제 다자녀는 단순히 산술적으로 ‘많이 낳는 것’만이 아니라 (김형주 외, 2024) ‘함께 키우는 사회’로의 전환을 가능하는 지표가 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강은애, 남이해. (2022). **서울시 다자녀 가구 실태조사 및 정책 과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강하라, 문정희, 박지영. (2021). **부산시 다자녀가정 지원 및 활성화 방안**. (재)부산여성가족개발원.
- 고순정. (2025. 3. 10.). “2명? 3명? 다자녀 기준 ‘제각각’”. **KBS**. <https://news.kbs.co.kr/news/view/view.do?ncd=8196189&ref=A>
- 관계부처 합동. (2023. 7. 27.).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안)**.
- 관계부처 합동. (2023. 8.).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방향(안)**.
- 국가법령정보센터. (n.d.). **다자녀**. <https://www.law.go.kr/ordinSc.do?menuld=3&subMenuld=27&tabMenuld=139&query=%EB%8B%A4%EC%9E%90%EB%85%80#>
- 김연주. (2023. 8. 17.). **자녀 두 명도 이젠 다자녀... 특공 아파트 분양받고 車 취득세 면제**.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3/08/16/SYBA4SWX4VBHBFS7Y7GS3AGKG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김형주, 정세정, 박미선, 김동훈, 김지민. (2024). **청년의 결혼 및 출산 인식과 세대지향적 저출생 정책지원망 구축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청소년연구원.
- 구원.
- 대한민국정부. (2005).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완판)**.
- 대한민국정부. (2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대한민국정부. (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대한민국정부. (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완판)**.
- 배혜원. (2024). **다자녀정책 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다자녀 정책 뉴스기사의 댓글 분석**. **보건사회연구**, 44(2), 403-429.
- 법제처. (2025. 2. 2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다자녀 가구 개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1&cciNo=1&cnpClsNo=1&search_put=
-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2024).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 정책 사례집**.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 보건복지부. (2025). **2025 모자보건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 (2025). **2025 첫만남 이용권 사업 안내**.
- 여성가족부. (2025). **2025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 오지혜, 김술. (2022). **경남 다자녀가구 실태조사와 지원 방안**.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
- 우정구. (2023. 6. 22.). **‘두자녀가 다자녀인 시대’**. **경북매일**. <https://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961764>.
- 이만수. (2024). **다자녀를 둔 아버지의 부모됨 경험 연구: 근거이론 접근으로**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 인크루트. (2023). **다자녀 가정 지원조건 완화됐다는 사실_응답자 61.8%는 “몰랐다”** [보도자료]. <https://news.incruit.com/news/newsview.asp?newsno=43528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24. 8. 30.).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 및 향후 계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12.).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 및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한 저출산·고령 사회 정책 로드맵.**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9. 15.). **다자녀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보도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2. 11. 9.). **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단계적 확대: 국가장학금 및 주거 지원 확대, 생활밀착형 혜택제공 등 추진** [보도자료].

정혜윤. (2024. 3. 12.). 다자녀 혜택 기준 ‘제각각’ 시민들 혼선. **경상일보**.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3951>

최효미, 박은정, 엄지원. (2020). **다자녀 기준 완화 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육아정책연구소.

충청북도. (2024. 7. 14.). **충북도, 초다자녀가정 지원사업 등 저출생 대응 4개 사업 보건복지부 협의 완료** [보도자료].

통계청. (2025. 2. 26.). **2024년 출생·사망통계(잠정)** [보도자료].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04&list_no=435209&act=view&mainXml=Y

통계청. (2025. 3. 10.). **영유아수별 가구 및 연령별 영유아-시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C1601&conn_path=l3

통계청. (2025. 3. 10.). **미성년자가 있는 자녀수별 가구-시군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C1601&conn_path=l3

Bujard, M., Lück, D., Passet-Wittig, J., & Lux, L. (2021). *Three children and more – Families from the middle of the society*. Konrad-Adenauer-Stiftung. Federal Institute for Population Research. <https://www.kas.de/documents/252038/10943586/Three+children+and+more+-+families+from+the+middle+of+the+society.pdf>

Centre des Liaisons Européennes et Internationales de Sécurité Sociale(CLEISS). (2024). *Systèmes nationaux de sécurité sociale: Les prestations familiales*. https://www.cleiss.fr/docs/regimes/regime_france4.html

Hank, K., Steinbach, A. (2019). Families and Their Institutional Contexts: The Role of Family Policies and Legal Regulations. *Köln Z Soziol* 71, 375–398. <https://doi.org/10.1007/s11577-019-00603-z>

Istituto Nazionale della Previdenza Sociale(INPS). (2023. 4. 17.). *Circolare numero 41 del 07-04-2023: Bilancio di previsione dello Stato per l'anno finanziario 2023 e bilancio pluriennale per il triennio 2023-2025 (Modifiche alla disciplina dell'Assegno unico e universale per i figli a carico introdotta dalla Legge 29 dicembre 2022, n. 197)*. https://www.inps.it/it/inps-comunica/atti/circolari-messaggi-e-normativa/dettaglio.circolari-e-messaggi.2023.04.circolare-numero-41-del-07-04-2023_14128.html

Ministry of Finance Singapore. (2025). *FY2025 Budget Statement*. <https://www.mof.gov.sg/docs/librariesprovider3/default-document>

- library/fy2025_budget_statement.pdf
- OECD. (2019). *The Future of Families to 2030*.
OECD Publishing
- Stamoulis, K., & Pierrakos, G. (2023). What
Constitutes a Large Family Today? A
Multi-Dimensional Approach. *Advances in
Social Sciences and Management*, 7, 7–9.
- Strategy Group Singapore. (2025. 2. 18).
Strengthening Support for Large Families.
<https://www.strategygroup.gov.sg/strengthening-support-for-large-families/>
- Tan, P. L. (2025. 2. 18). *Snap Insight: Why Budget
2025 is making it more affordable to have
larger families*. Institute of Policy Studies.
[https://lkyspp.nus.edu.sg/ips/publications
/details/snap-insight-why-budget-2025-
is-making-it-more-affordable-to-have-
larger-families](https://lkyspp.nus.edu.sg/ips/publications/details/snap-insight-why-budget-2025-is-making-it-more-affordable-to-have-larger-families)

The Multi-Child Family Policy: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for Improvement

Bae, Hyewon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multi-child family policy has been in place in Korea as part of its population strategy, with the target population expanding since 2020 from “families with three or more children” to include “families with two or more children.” This shift represents a move toward more meaningful, per-child investments, which has led local governments to establish new ordinances and amend existing policy measures accordingly. However, the standards and approaches applied for providing support vary across local governments. A case in point is the concept of “supra multi-child” introduced by some municipalities, which, while having the positive effect of further differentiating the levels of support, can add another layer of eligibility criteria. The multi-child family policy, focused on reducing the family burden of infant and early childhood care, consists mainly of family-specific exemptions, reduced charges, and time-limited cash benefits. This policy in the time ahead should become, beyond a mere means of encouraging childbirth, a comprehensive support system that incorporates life-course considerations, aiming at ensuring children’s rights and a better quality of life for families with children.